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제출이유

가.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10.3.31 공포, '11.1.1 시행)되어 그 후속 조치로 성주군 군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

나.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의 추진으로 조세법률주의 확보와 군민의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을 추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 ~ 안 제8조)

·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군세세목(담배소 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서류송달의 방법 및 송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나. 부과 및 징수(안 제9조 ~ 안 제24조)

· 납세의무, 도세와 군세의 징수 순위,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제공, 군세 환급금, 징수유예, 납세 담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체납처분(안 제25조 ~ 안 제45조)

· 압류 및 압류 해제, 수색, 질문검사권, 공매, 배분방법,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시 업무처리, 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등을 규정

라. 보칙(안 제46조 ~ 안 제51조)

·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과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

4. 관련법령

가. 지방세기본법

나.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지방세 조례 및 규칙 행안부 표준안

5. 검토의견

□ 제출자, 제출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주요내용은

-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제정), 지방세법(전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등 3개법으로 분법('10.3.31 공포, '11.1.1 시행)되어 그 법률에 위임된 군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 따라서 지방세법 분법체계에 맞추어 현행 지방세 조례 중 총칙 분야는 지방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개별 세목 분야는 조례로 규정하여 현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합하는 등 세목체계의 간소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례제정의 근거인 지방세법의 분법으로 그 위임 근거를 반영하여 성주군세에 관한 기본사항과 자치단체별 일부 상이한 조세 비율에 대한 통일된 조세부담을 부과하고,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법률관계를 확실히 하게 하여, 과세의 공정성과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군세조례의 구성요건과 내용이 적절하고 중앙정부의 권고안이 적법하게 반영되는 등 조례의 제정에 흠결은 없으나, 다만 재무행정의 권한위임에 따른 단위사무에 대하여 적절한 사무조치가 이행되어야 하고, 군세조례 및 감면조례가 상위법 개정으로 개정이 빈빈히 이루어져 주민의 생활에 불편과 저항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제출이유

가. 2011년 시행되는 지방세법 분법(지방세법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체계에 맞추어 현행 군세조례 중 총칙분야는 군세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나. 군세세목 간소화(8개 → 5개)에 따른 개별 세목분야의 조문을 지방세 체계에 맞추어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군세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목적, 정의 및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군세세목(안 제4조부터 안 제25조)

담배소비세,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지방소득세(소득분, 종업 원분), 재산세, 자동차세에 관한 사항을 각 조문별로 규정.

다.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축세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4. 관련법령

가. 지방세기본법

나.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지방세 조례 및 규칙 행안부 준안

5. 검토의견

□ 제출자, 제출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주요내용은

-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3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현행 16개인 지방세목 중 동일세원에 중복과세 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사실상 세목의 영세성으로 조세목적을 상실한 세목을 폐지하는 등, 군세세목 8개를 5개로 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맞게 군세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담배소비세, 제3장 주민세, 제4장 지방소득세, 제5장 재산세, 제6장 자동차세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이한 사항은 기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합하여 재산세로 하고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합쳐 자동차세로 하며 취득세와 취득분 등록세를 취득세로 단일화,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합하여 지역 자원시설세로 새로운 세목을 설정하며, 그리고 농촌의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축세의 폐지 등입니다.

○ 결론적으로 지방세법의 분법 목적이 지방세의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 징세비용 절감이므로 그 목적 실현을 위한 하부 법률인 조례의 전면개정은 법률에 근거한 조치로써 그 절차와 내용이 정부의 통일안을 준수하며, 현실성을 감안한 행정실효성의 현실화 조치입니다.
특히, 지방세 중 주세에 대한 종세의 통합조치는 주민의 조세이해를 돕고 통합에 따른 세율의 인하는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등 본 조례의 개정이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가.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2011.1.1시행)에 따라 감면 남발 방지와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종전의 감면규정 일부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군세감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 없는 조문 등을 폐지.

나. 조례개정을 통한 감면규정의 명확화로 세무행정의 안정적 운영과 신뢰세정을 구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군세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되어온 사항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 삭제

나. 관련법규 개정 및 감면규정 명확화를 위하여 시각장애 4등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 종교단체의 의료업, 한센 정착농원 지원, 문화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벤처기업육성촉진 지구,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감면 사항을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규정하고,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는 감면제외, 감면신청, 중복감면의 배제 등에 대하여 규정함.

4. 관련법령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행정안정부 감면조례 표준안

5. 검토의견

□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종전의 군세감면 대상 주요내용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자동차,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 평생교육 시설, 농협중앙회, 농어촌주택개량,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의 근거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시각장애 4등급 장애인 자동차, 종교단체 의료업 한센농원지원, 문화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벤처기업 육성지구,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조치 근거 마련하고자 감면조례의 전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임된 사항을 구현하는 것으로 세제개편에 그 감면비율을 반영하며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조세행정 일반성, 그리고 조세특례에 대한 명확한 표시를 통하여 지역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의 공기업·사회법인의 경제활동 지원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그 대상과 형식적 법적근거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전국 자치단체의 유사 수수료 간 요율 격차를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어선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의 수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설

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수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수료 징수 기준에 따라 변경

다. 공장등록증명 등 6개 수수료의 구분 및 기준을 개정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칼라 또는 도면 첨부 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2) 공장등록증명 1통 → 공장등록증명 1건

(3)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계속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갱신 또는 기간연장

(4) 체육시설업 신고 → 체육시설업**의** 신고

(5)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6) 세목별과세증명 1통 → 세목별과세증명 1건

4.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 139조

(2)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별표

5. 검토의견

□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어선원부에 관한 열람 등 수수료’,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수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징수기준에 따라 변경하고 ‘공장등록증명 등 6개 수수료’의 구분 및 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따라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대통령령의 징수기준을 적용하는 조치로써 절차와 준칙으로 별도의 검토는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